



일본의 감귤 공동출하·공동정산제도와 제주감귤의 유통개선 방안

유영봉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1. 문제제기 : 유통환경의 변화와 공동출하 제도

최근 우리 농산물을 둘러싼 유통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외국계 자본 및 판매시스템을 갖춘 대형유통업체의 상륙, 인터넷 및 홈쇼핑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대, 패스트푸드 및 체인레스토랑 등의 대형의식업산업의 발달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농산물 시장은 과거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통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산물 산지의 기존 출하시스템으로는 이들 시장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농산물 생산자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산지농협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유통업체(상인, 대형유통업체 등) 위주의 시장주도권을 생산주체(생산자단체, APC 등)위주의 시장질서로 전환해보려는 시도로 추진되고 있다. 즉, 영세 다수의 생산주

체들을 계열화함으로써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공동출하사업이다. 이 공동출하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판매)-공동정산의 출하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유통효율을 제고하고, 계획출하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하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출하제도는 아직 우리 농협에서는 생소한 것이며, 농협중앙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공동계산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작목반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공동출하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금년에 들어서 농협중앙회는 유통활성화 사업의 중심을 공동출하, 공동계산에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²⁾.

감귤의 경우 공동출하제 도입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를 시범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표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다른 품목과 달리 산지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산지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수십 년간 형성된

기존의 감귤출하시스템을 개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의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감귤출하의 시장교섭력 증대 및 유통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유통처리의 주도권을 산지가 확보하려 한다면, 하루속히 ‘감귤 공동출하·공동정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제도의 도입과 완전한 실천이 가능해 진다면 이는 감귤유통 역사상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각되고 있는 감귤의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에 대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지역농협 및 단위농협)의 유통관련 담당자 양자에게 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히 어떠한 제도이며, 생산자의 경우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은 혼란스럽고, 생산능가 스스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감귤의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에 대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관련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의 의의(意義)와 그 시행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감귤의 공동출하에 선행적 모델로 평가되는 일본의 감귤공동정산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II. 현행 감귤 출하실태와 그 한계

1. 감귤출하실태와 출하의사결정

1990년경부터 감귤의 생산 동향은 과거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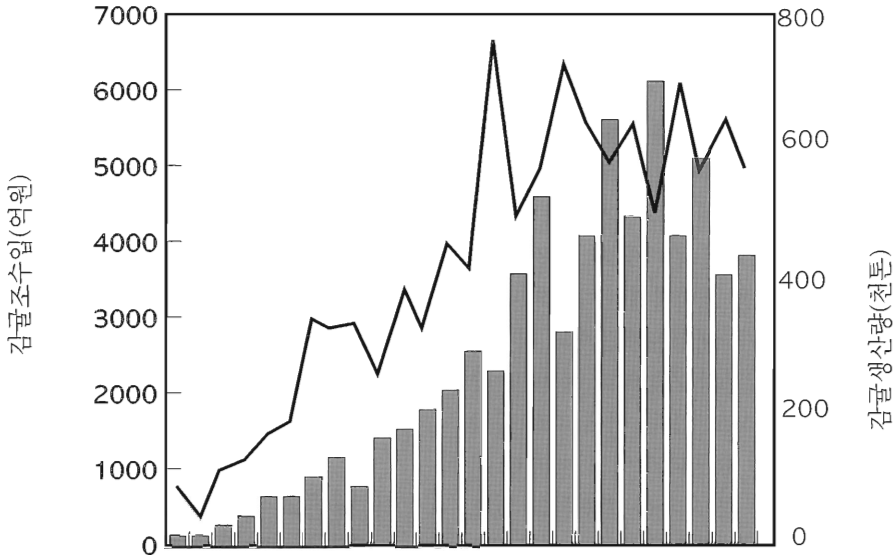
수 있듯이 1989년, 1992년, 1997년의 감귤생산량은 절정에 달해 있다. 결국 1989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귤의 총 생산량은 60만톤 전후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감귤 판매단가 역시 199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고, 조수입총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농산물 수입개방, 소비자의 과일소비성향 변화 등과 맞물려 ‘감귤의 생산과잉 시대’로의 진입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감귤산업의 위기론이 팽배하게 되었고, 감귤생산 부문의 구조조정, 유통부문의 개혁을 요구하며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현행의 감귤의 출하체계는 과거 제주에서 감귤출하가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상인과 계통출하의 관행적 출하형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계통출하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생산능가는 직접적으로 선별, 포장, 출하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자신의 감귤을 자신의 책임아래 수확하여, 저장한 후 작목반의 선과장을 통해 선별, 포장한 후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농가는 일단 자신의 감귤을 수확하여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한 후, 자신에게 입수되는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출하시기, 출하물량, 출하처, 출하경로(상인, 전속거래처 또는 계통출하)를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이 농가의 감귤판매 조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의 감귤 출하는 주요 시장별 일별 감귤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의 수년간의 경험에 의존하여 출하시기, 출하처, 출하물량이 결정되게 된다. 이는 농가 스스로의 시장분석과 판단에 의해, 출하물량의 적절한 배분



〈 그림 1 〉 감귤 생산량 및 판매단가 추이 : 1975~2000년



출처: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8, p21.

을 통해 총조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양의 감귤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농가의 출하의사결정 행위(출하시기, 출하처, 출하량, 출하경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조수입 총액은 달라지게 된다. 결국,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지 못한 현재의 출하시스템 속에서 생산농가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관행적 출하시스템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출하시스템은 고품질의 감귤생산보다 생산된 감귤의 적정한 판매가 판매수입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어, 농가의 고품질 감귤 생산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게 된다.

2. 현행 감귤 출하체계의 특징과 그 한계

현행 감귤의 출하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해보면, 우선 첫째로 현행 감귤 출하체계는 개별 농가 단위의 출하시스템이 근간을 이루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생산농가가 상호 간 완전경쟁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농가 모두가 출하경쟁자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감귤출하처에 개별농가가 종속되게 되고 시장에 대해 독점적 산지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는 소규모 선과장 및 작목반 중심의 출하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작목반 단위의 영세 선과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에서는 체계적인 출하조절이 불가능하다. 출하조절이 되지 못할 경우 독점적 산지로서의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셋째로 시장교섭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감귤의 독점적 산지인 제주로서는 생산자 협력에 의한 시장교섭력의 확보가능성이 다른 지역의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별출하 체계 속에서는 출하주도권을 산지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결과

적으로 가격교섭력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생산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판매 행위의 실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로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재를 들 수 있다. 현행의 출하체계는 다양한 시장의 욕구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장여건은 과일소비량의 감소와 소비패턴의 다양화, 안전성 및 건강지향 등 새로운 소비형태의 대두와 외국 과일류의 수입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증가, 도매시장의 기능약화 등 매우 급속한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선별 및 포장에 요구되고 있고, 마케팅 전략이 과거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현재와 같은 개별 농가단위의 영세한 출하규모로서는 대응이 곤란하다.

다섯째로 현행의 출하시스템으로는 공동의 마케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농가, 상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 각각의 출하자가 전속거래처 등 자신들만의 판로를 확보하고 그들 시장에 대해 각각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는 공동의 브랜드가 부재함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공동의 홍보 또는 마케팅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공동의 브랜드, 통일된 선별기준 및 포장 등 공동판매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출하시스템 아래에서는 각각의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품질 등급평가의 신뢰도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제주감귤의 선별등급은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규격선별 위주이다. 당도 및 상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 평가 기준은 명료하지 않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귤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크기위주의 가격차별화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감귤 출하체계로는 유통효율을 제고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개별농가 단위의 경쟁적 출하체계로는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수송은 물론 시장개척, 판매, 홍보 등의 마케팅에 있어서 독점적 산지로서의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유통효율증대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일본의 감귤 공동출하·공동정산제도 -시즈오카현의 사례-

1. 감귤공동출하·공동정산제의 도입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중반까지 상인들의 수집에 의해, 감귤을 선별하여 출하하였다. 당시 출하형태는 생산자가 감귤을 운반하여 상인에게 출하하고, 상인은 이를 선별하여 나무상자에 담아 시장에 출하하는 재래적 출하 방식이었다. 이 당시 감귤 출하가격(농가수취가격)은 산지에서 출하자와 상인과의 직접상담에 의해 결정지어지게 됨으로써, 생산자는 상인의 힘에 좌우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상인 출하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 상인의 폭리를 막기 위해 생산자단체들에 의한 공동출하(농협계통출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의 경우 농협계통출하가 시작되는 초기시점부터 공동선별에 의한 공동출하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 후 1960년대 초반부터는 공동출하 후 대금에 대한 공동정산의 방식이 '기간 풀(Pool)



제'에서 '전기간(감귤출하기간) 풀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전기간 풀제로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일본의 공동정산제는 감귤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위한 농협 선과장 설치시기부터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공동정산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산지조합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감귤생산 및 출하에 대한 정산방식은 상인 출하조합을 제외하면 공동선별·공동판매(共選·共販)에 의한 공동정산방식을 주로 하고 있다.

2.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방법 및 실태

1) 공동정산의 단계별 시행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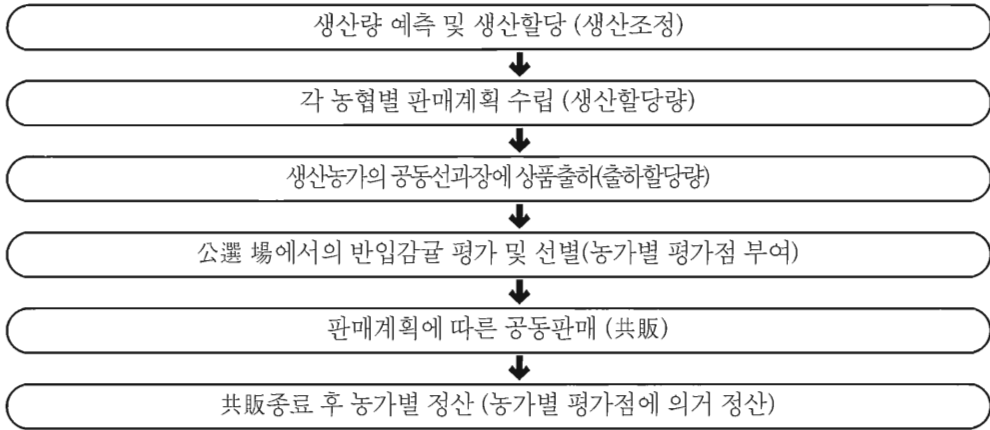
일본의 공동정산제는 기본적으로 공동선별·공동판매(共選·共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본감귤의 공동정산제는 전체 감귤생산량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생산량 할당, 출하량 할당이 [일본과수협회]→[일본원예조합연합회]^{*)}→[각 縣 경제농협연합회]→[縣 관내 각 지역농협]→[생산농가]로 이어져, 기본적으로 물량조정과 동시에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 시행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생산량 예측 및 생산할당
 - 5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감귤의 착화상태를 파악하여, 생산자 조직(농협계통조직)을 통해 1차 예상 생산량을 추정함. 이를 바탕으로 JA(경제농협연합회 산하 농업협동조합) → 현 경제농협연합회 → 일본원예조합연합회 → 일본과수협회를 거쳐 각 현 농협별 “생산조정 노력 목표

치”를 제시함.

- 매년 8월 1일 농림부의 1차 공식 예상생산량 추정치가 공표됨(노지 조생, 보통은주 포함).
- 매년 10월 1일 농림부의 공식 예상생산량을 바탕으로, 각 현별 2차 수정 예상생산량을 발표하고, 각 현 경제농협연합회별로 “실제 생산조정 목표치”를 할당 함.
- 최종적으로 10월 말 생산할당량의 기본수치 확정발표 함.
- 제2단계 : 각 농협별 판매계획수립
 - 각 농협은 과거의 출하실적 평균치와 5월의 ‘생산조정 노력목표치’를 바탕으로 판매처별, 출하계획을 수립함.
 - 8월 발표되는 농림부의 1차 예상추정량을 바탕으로 각 농협별로 “JA출하계획”을 수립함.
 - 9월말 농가별 희망출하량을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할당량 및 출하계획을 결정함.
 - 10월에 확정되는 ‘실제 생산조정 목표치 할당’에 부합되도록 최종적으로 조정함. 이 시점에서 ‘JA 출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각 생산농가별 출하계획을 수립 후 최종적으로 농가별 할당(가공용, 생과용)이 완료됨.
- 제3단계 : 생산농가의 공동선과장에 감귤출하
 - 각 생산농가는 가공용 및 생과용으로 출하할당을 받은 출하량에 대해 수확한 감귤을 가공용과 생과용으로 구분하는 농가 자가선별단계를 거쳐 선과장에 출하함.
 - 이 단계에서 농가는 각 지구별 공동선과

〈그림 2〉 일본 감귤출하의 공선·공판·공동정산 시행 단계



장에 출하하고, 자신이 출하한 감귤에 대한 '평가표'를 받게됨. 각 시즌별 감귤 출하가 완료된 후에 이 평가표에 의거해 농가별 판매대금을 공동정산하게 됨.

- 만일 농가가 할당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출하직전에 신고 후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제4단계 : 반입감귤에 대한 평가, 선별
 - 개별 생산농가가 공동선과장에 반입한 감귤은 선별된 후 선과장별 평가방법에 의해 등급이 결정됨. 평가등급은 감귤의 크기구분에 따른 "階級"과 맛, 색, 외관 등을 고려한 품질구분에 따른 "品等(品質等級)"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게 됨. 이 두 요소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 두 요소에 의해 농가가 출하한 감귤에 대해 평가점수를 결정함.
 - 선별 및 평가는 평가경험자를 조합에서 결정하여 '전문평가인'에 의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 光센서(비파괴검사기)를 통한 기계적 평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비파괴선과기가 도입되지 않은 공동선과장(중형 지

구선과장)은 현재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선과장 특성별 평가방법은, (유형1)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품등평가방식, (유형2) 품등 및 계급평가 병행방식, (유형3) 센서평가방식으로 크게 삼분되어 병행되고 있으나 센서평가방식의 대형공선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제5단계 : 판매
 - 선별 포장된 감귤은 이미 수립된 판매계획에 따라 출하대상 시장의 구매담당자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각 출하처별 일일 출하량을 조정하면서 농협의 판매담당자에 의해 출하됨.
 - 판매단계에 있어서는 공선장 명의로 상품이 출하되고, 출하상자에는 공선장의 상표 또는 고유디자인된 외형에 선과된 상품의 규격계급, 등급, 공선장명, 중량이 표기됨. 여기서 표기되는 규격계급(2L, L, M, S, 2S 등)과 품질등급(수, 우, 양 등)은 전국의 모든 선과장에서 통일되게 표기를 하고 있음.



● 6단계 : 최종정산

- 각 농가는 선과장 반입시 4단계로 평가된 감귤에 대한 출하점수를 기준으로, 각 공동선과장별 규정(共販 渡金制度)에 의해 가정산금(假精算金)을 지급받게 됨.
- 공선장의 출하 및 판매가 전부 완료된 시점에서 각 현의 “감귤진흥회”와 경제농협연합회, 지역JA가 모여 정산방법을 협의함.
- 정산방법은 총판매금액으로부터 공선장 운영경비, 출하경비, 수수료를 포함한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선장별 총 출하점수로 나누어 출하점수 당 판매단가를 결정함. 이 점수 당 단가를 농가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농가별 최종판매액을 확정된 후, 미리 지급된 가정산금을 공제한 잔액을 최종 정산함.

2) 감귤의 등급 및 규격 평가방법

일본의 공선·공판·공동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된 감귤에 대한 평가이다. 이 평가는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의 판매수입과 직결되게 됨으로 선별과 선별에 따른 등급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경우 공선장이 운영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평가점수에 의한 공동정산이 이루어져왔으나, 초기에는 각 현별로 등급 및 규격 등이 서로 상이하여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후 국가의 감귤류 표준규격이 고시되고 전국이 통일됨으로써 규격과 등급의 명칭이 통일되었다.

일본의 감귤류 표준규격은 우선 ‘감귤류’를 정의하고 이에 속하는 범주를 명확히 한 후, 과일의 병충해 및 외관등에서 ‘중결점과

(重缺點果)’와 ‘경결점과(經缺點果)’로 양분하여 구분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표준규격 중 ‘중결점과’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다른 품종이 섞인 ‘異品種果’이며, 그 다음이 부패변질과, 병충과, 미숙과, 상해과 순이다(〈부표1〉 참조). 다음은 선별을 위한 감귤의 ‘규격’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규격은 품위(품질등급)와 대소기준(크기)으로 나뉘어 각각의 품종별로 정의되어 있으며, 품위에 따라 수품, 우품, 양품으로 3분하고, 규격은 3L, LL, L, M, S의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부표 1〉 및 〈부표 2〉 참조). 이 5종류는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4L, 2S 등으로 규격외 품을 구분하여 가공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출하시 상자에의 표시내용은 품종명, 등급, 크기, 중량, 출하자 성명 또는 상표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선과장을 통한 감귤은 출하자 성명란에 공동선과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공선(共選)’ 표기를 하여 출하하고 있다.

3) 선별평가 및 정산 방법

감귤의 선별은 앞에서 살펴본 규격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있으나, 정산을 위해 선별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정산시 활용하고 있다. 생산농가가 선과장에 상품을 반입하면 선과장으로부터 발급되는 평가점수표가 농가의 판매수입을 결정짓게 되고, 농가는 자신의 물건이 언제, 어디에 판매되는가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있다. 반입된 감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점수가 배정되어 최종 정산되는가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품등(품질등급) 및 계급평가
선과장에 따라 전담평가원 또는 광센서(비

과피선과기에 의해 품등과 계급을 평가하고, 채점기준표에 의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이 과정에서 부패과, 상처과, 기형과가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감점함. 채점은 품등평가 기준표, 등급평가 기준표 등에 의거 평가함. 채점을 위한 기준표는 장기간의 가격형성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여 그 이상(평균이상 품질)과 그 이하(평균이하 품질)에 대해 지수화한 것임. 품질 평가에서는 '優品'을 100으로 하고, 크기평가에서는 '2L' 크기

를 100으로 하고 있음.

● 제2단계 : 맛의 평가

맛의 균질화를 위하여 당산검정을 시행하여 점수에 가감(加減)함. 검정용 감귤은 1단위 출하물에 대해 품등(품질등급) 및 계급이 보통으로 평가된 과일 3개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대상으로 함(비파괴검사기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의 선과장 평가방법). 당의 경우 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가감하지만, 산의 경우는 1도를 기준으로 0.1도 간격으로 감점하고 있

〈표 1〉 감귤 평가를 위한 등급 및 계급 채점 기준표 : 시즈오까현 ① 品等評價기준

	秀	優	良	可
(특품)	120	100	20	
良(상품)		100	70	20
格(보통)		100	70	20

② 階級評價(並品)기준

	4L	3L	2L	M	S	2S	L
12월이전	60	70	100	100	70	0	110
1월이후	50	70	100	110	80	0	110

$$\text{누적점수} = (\text{계급점수 또는 평가자 판단점수} \pm \text{맛 평가점}) \times \text{상품중량}$$

〈표 2〉 감귤출하에 따른 평가점수 계산예

등급	기준	수(120)	우(100)	양(70)	가(20)			등급점수	총점 (A) × (B)/100
	비율(%)	10	50	30	10			85 (A)	
계급	기준	3L(70)	2L(100)	L(110)	M(100)	S(70)	2S(0)	계급점수	
	비율(%)	10	25	35	25	5			
	점수	7	25	38.5	25	3.5		99 (B)	

$$\text{농가A의 누적점수} = 84.15 \quad 1000 \text{ kg} = 84,150 \text{ 점}$$

(예시내용) : 농가 A가 1000kg의 감귤을 출하한 경우



으나 감점의 정도는 가중적이며, 감점의 폭도 -2점부터 -48점까지 매우 큼. 즉, 산도차이에 따른 점수감점이 매우 큼. 당과 산의 가감점 수표는 아래 <부표 3>과 <부표 4>와 같음.

● 제3단계 : 평가점수 계산방법

평가점수는 농가별로 출하물량에 대한 총 점을 누적점수로 산출하고, 이 점수에 의해 최종정산 또는 가지급정산시 사용함. 평가점수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표 2>는 계산방법의 예를 든 것임.

● 제4단계 : 정산방법

정산은 선과장의 총판매액에서 제경비(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순판매수입금을 선과장의 총 출하점수로 나누어 점수당 판매단가를 산출하여 각 농가별 판매수입금을 계산함. 따라서 농가는 자신의 점수와 선과장 판매매출에 따른 판매단가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 사항은 선과장의 판매담당자에게 일임하게 됨. 구

체적인 품종별 정산기간과 정산항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IV. 감귤 산지유통개혁의 대안 :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

1.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동정산제(Pooling System)라 함은 “개별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공동의 일정한 선별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한 후, 참여생산자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동안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기간 중에 획득한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각자의 개별생산자에게 분배·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의 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 첫째는 통일된 선별기준에 따른 공동선별이다. 개별 선별과 달리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① 품종별 정산기간

품 종	정산기간
하우스감귤	단기pool
극조생·조생	단기 pool
중생·청도(靑島)	12월이전pool, 12월이후pool(장기)
수태랑(壽太郎)	12월이후pool(장기)
원료용	조생pool과 보통pool

주) 단기pool 기간은 감귤위원회에서 결정함.

② 정산 항목 및 내용

정산항목	내 용
가산금(加算金)	장기pool기간의 경우에 적용하고, 가산율은 감귤위원회에서 결정함
집하운임	정산할 때 지불
수수료	kg당 3円. 단, 정산시 공제함.
판매장려금	각 회원조합 지부에 지급
선지급금	규정(공동판매 가지급금제도)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불함. 대개 70%를 지불함.

경우 공동의 통일된 기준으로 선별되어 개별 출하능가의 상품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결과가 곧 생산자의 소득과 직결되고, 생산자는 이 단계부터 출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첫 열쇠가 된다.

두 번째 요소는 공동판매이다. 이것은 참여 생산자의 생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선별되어 등급화 된 이후 대량의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농가가 각각의 기준으로 선별한 상품을 각자의 출하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자의 생산물이 동일 기준으로 등급화 되었으므로 생산자의 이름보다는 공동판매주체 또는 공동선과장의 이름으로 품질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공동의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다양한 공동판매 기간의 설정이다. 이는 공동정산의 기간 설정으로서 대개 전기간(全期間) 공동정산의 경우 출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나, 1주일, 1개월 단위 또는 회기단위 등 다양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등급별 가격차에 따른 정산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정산기간 중 발생한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초로 하여 출하자들에게 총 판매대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등급별 가격차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실제 정산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품질등급별 가격차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정산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상품 생산의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가 노로지 고품질 상품생산에만 선념하게 함으로

써 그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3〉은 현행의 개별출하·개별정산방식과 공동출하·공동정산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현행의 출하시스템은 농협의 계통출하든 상인출하든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수확, 수집, 선별, 포장, 판매, 수송의 전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공동출하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서 공동출하를 담당하는 조직체가 생산이후의 모든 단계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의 품질등급차이에 따라 정산하는 체제이다. 감귤에 도입될 바람직한 공동출하제도는 〈그림3〉의 (유형4)처럼 수확단계까지는 생산자가 담당하는 경우이나, 향후 수확노동력의 부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선키스트처럼 수확단계까지도 공동으로 행하게 되는 (유형5)도 검토되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한 생산과 판매의 분리가 가능해 지고, 생산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호경쟁관계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출하·공동정산제가 시행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장점은 (1)불안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2) 통일된 등급기준아래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함으로써 시장교섭력 및 시장대응력이 증대된다는 점, (3)출하이전부터 참여농가의 출하예상량을 근거로 출하조절과 계획출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 (4)공동으로 출하하게 됨에 따라 출하단위의 대형화에 따른 유통경비 절감 등 유통효율이 증대된다는 점, (5)공동의 마케팅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1)정산대금의 지연, (2)개별농가의 차별성 및 유연성 감소, (3)판



〈그림 3〉 개별출하와 공동출하 방식의 비교

기존 개별출하방식			출하단계	공동출하방식	
상인	농협	농협	(정 산)	공동출하 (농협출하센터)	공동출하 (농협출하센터)
		생산자	(수 송)		
	작목반		(관 매)		
			(포 장 · 선 별)		
			(수 집)		
생산자	(수 확)	생산자			
생산자		(생산관리)	생산자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출처: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8, p110.

매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른 손익발생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제주 감귤의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 방안

현행 출하체계 분석결과로부터 감귤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을 위한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감귤의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그림 4〉과 같은 조직체를 상정할 수 있다.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추진체계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생산농가] - [집하장] - [선과장] - [지역출하센터] - [감귤출하센터연합회]의 구조를 가지고 그 조직별 체계와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칭) 감귤출하센터 연합회 : 공동판매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귤의

전체 출하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하조직을 통해 예상 생산량, 예상 출하량 등을 협의하여 출하조정을 수행하도록 함. 기구의 구성은 각 지역의 출하센터의 대표들과 행정 및 기타 관련단체 등 계획적인 감귤공동출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표들을 포함하도록 함.

- 각 지역 감귤출하센터 : 제주 전역을 5~10개정도의 대(大)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들 지역내 공동선과장을 관장하도록 함. 이들 출하센터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지역 선과장이 지역감귤 출하센터의 역할을 하며, 동일 지역내 다른 선과장들과 협의하여 지역내 공동출하 및 판매계획과 이에 따른 선과장별 선과계획 등을 설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대형선과장 : 각 지역의 감귤출하센터에 는 현재의 산지유통센터사업(APC), 또는 농협 직영선과장 및 감협 직영선과장 등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를 위한 선과장으로 구성하고,

이들 선과장들은 상호 연계하여 감귤 수집, 선과, 판매 등에서 협력하도록 함. 결과적으로 이들 선과장이 실질적인 공동출하·공동정산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 선과장에 전문 판매담당자를 두고 판매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전체 판매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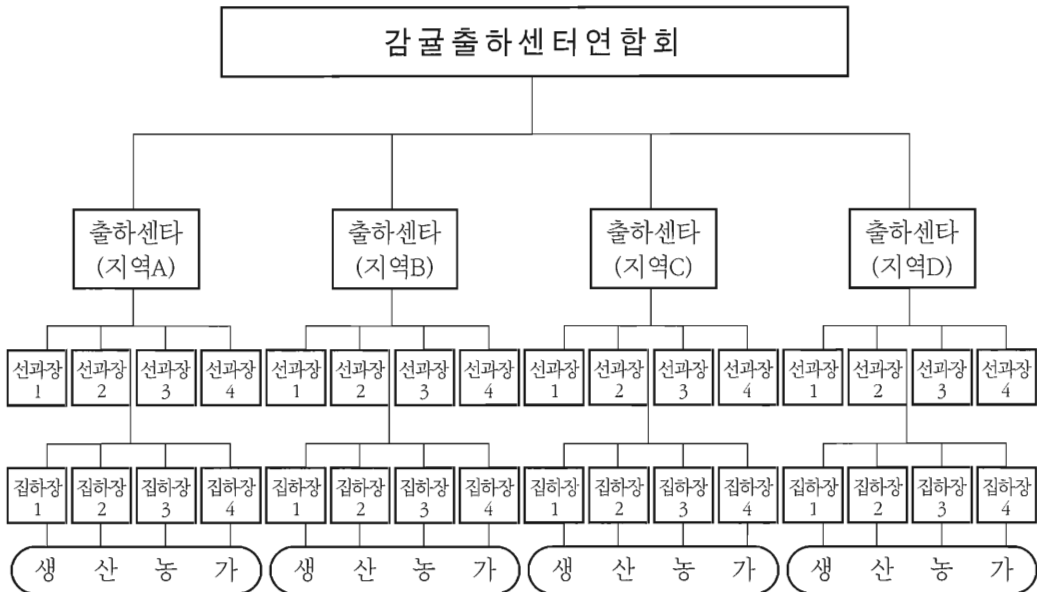
- 집하장 : 각 대형선과장별 감귤 집하장을 부락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선과장은 출하계획에 따라 각 생산농가에게 출하시기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농가는 자신의 감귤을 집하장에 운반하면 선과장에서 수집수송을 담당하도록 함. 따라서 생산농가는 생산물을 가까운 인근 집하장까지만 수송한 후, 선별, 포장, 수송, 판매의 전 행위를 공동판매선과장의 감귤출하센터에 일임한 후 판매대금을 정산받도록 함.

이상의 조직체는 시장교섭력을 행사하기 위한 출하물량조정이 가능한 조직체로서 구상되어져 있으며, 이 조직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출하·공동정산제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효과를 거두도록 기획되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농가의 자생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 방안이 지원되어져야 하며, 중단기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⁸⁾.

V. 결론 : 제주감귤의 산지유통개혁의 실현과 과제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의 시행은 기존의 관행적 출하체계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기존의 출하체계 속에서 형성된 생

(그림 4) 감귤의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 체계도(안)





산자, 출하자, 상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게 된다. 따라서 개별선별-개별판매를 중심으로 한 출하관행을 공동선별-공동판매-공동정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오랜 기간 개별생산자와 수집상들간의 고리가 깊은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출하제도로의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출하제도의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위한 공동출하가 자리잡을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산자들의 호응을 얻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공동출하가 어려우며, 공동출하에 의한 출하조절, 시장교섭력 확보가 쉽게 달성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출하체계의 한계인식 : 기존의 출하조직으로서의 다양한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생산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독점적 산지로서의 제주감귤생산자들이 장기적으로 소비시장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하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출하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생산자 공동의 이익발생 구조 이해 :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가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가격형성과 소득을 유지하고, 유통경비를 줄이며 생산자 이익발생에 도움이 되는 출하체계라는 점을 참여자들이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 없이 행정기관, 생산자단체의 각종 지원을 앞세운 지도와 실행은 지속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다.

(3) 공정한 정산을 위한 품질 등급 기준 설

정 : 공동정산제의 실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이 출하한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 평가이다. 등급의 평가는 공동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의 판매수입에 직결되므로 생산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계획적인 출하조절 체계 확립 :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의 실행이 궁극적으로 시장교섭력의 증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생산자 시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출하조절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출하실행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귤 공동출하조직간의 연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생산과 판매의 분리 : 현행의 생산농가는 자신의 상품이 소비지 시장 어느 곳에 언제, 얼마에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출하의 경우에는 참여생산농가는 공동출하시 자신의 상품이 어떠한 품질평가를 받게 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 판매에 관해서는 공동출하를 담당하는 판매전문가에게 일임함으로써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6) 판매전문가 양성에 의한 시장교섭력 확보 :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가 개별출하에 비해 확실한 이익발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판매전문가가 필요하다. 공동출하의 경우 그 출하조직의 판매담당자는 시장정보 분석에 능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공동출하체계를 구축할 경우 반드시 판매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담당자의 효과적인 판매활동을 위해 적절한 대우(판매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획해야 할 것이

다. 이는 공동정산제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밖에도 공동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에는 참여자들의 사정에 따라 느슨한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강력한 공동출하·공동정산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변화 및 시장여건의 변화속에서 감귤산지인 제주가 시장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개별출하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계획적인 출하조절속에서 산지의 생산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안정적인 감귤 공급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즉, 현재의 개별출하시스템을 공동출하시스템으로 하루속히 개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극복하는 길만이, 제주감귤이 독점적산지로서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 1)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 사업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도별 1개농협지정, 1993년까지 군별로 확대하여 111개 농협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97년 지정된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 123개소가 초기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정산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장교섭력을 갖춘 조합 또는 작목반은 극소수이며 2002년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공동정산제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 2) 농협중앙회에서는 2002년도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을 ‘공동계산제 도입 및 연합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 3) 감귤의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8. 을 참고하기 바람.
- 4) 현재 제주도내 선과장은 약 900여개소가 있고, 1999년산 감귤 처리실태를 기준으로 선과장의 평균 처리량은 583톤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즉, 선과장은 몇몇 개별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별 선과장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선과장이 작목반 단위로 육성되어 온 결



- 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선과장 통폐합 및 대형화가 공론화 되어 선과장 대형화 사업이 추진 되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기를 도입하는 선과장이 늘고 있으나, 상품의 품질 등급별 생산분포가 판매에 오히려 어려움을 낳고 있다. 또 비파괴 검사기의 평가 선세방식이 통계처리에 의한 당도 및 산도평가이어서, 품종별 정확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비파괴 검사기가 정착되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6) 우리의 농협중앙회 각 도 지역본부에 해당함.
 - 7) 자료출처 : 시즈오카현 경제농협연합회
 - 8) 구체적인 목표 및 중단기 단계별 추진계획 등은 유영봉, 현공남, “감귤의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대학교, 2001.8.를 참조.

〈부표 1〉 일본 감귤류 품질 등급기준표

① 품위기준

사 항 \ 등급호칭	수(秀)	우(優)	양(良)
크기균일	3L부터 S까지 어느 하나의 크기구분에 해당하고, 다른 크기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좌 동	좌 동
重欠点果	다른 크기가 섞이지 않은 것	좌 동	좌 동
輕欠点果	”	거의 섞이지 않은 것	많이 섞이지 않은 것

② 1과의 등급별 기준

사 항 \ 등급호칭	수	우	양
형 태	아주 좋은 것	좋은 것	보 통
일 소(日燒)	피해 없는 것	좌동	심하지 않은 것
병 충 해	”	경미한 것	”
상 처	바람 등의 스친 상처, 약해가 거의 없는 것.	경미한 것	
부 피	거의 없는 것	경미한 것	심하지 않은 것

출처: 일본 감귤류 표준규격

특집I 유통·제도 혁신을 통한 제주감귤 생존 방안

〈부표 2〉 일본 감귤류 크기 등급기준표 果의 직경(cm)

5.0	5.5	6.1	6.7	7.3	8.0	8.8	9.5	10.2	10.9	11.6
(2S)	S	M	L	2L	3L	온주밀감, 뽕강, 福原오렌지, 세미노루 네이블, 日向夏, 청견				
	(2S)	S	M	L	2L	3L				
	伊予柑	(2S)	S	M	L	2L	3L			
		八朔	(2S)	S	M	L	2L	3L		
			柑夏, 三 柑	(2S)	S	M	L	2L	3L	
				보통하귤	(2S)	S	M	L	2L	3L
5.0	5.5	6.1	6.7	7.3	8.0	8.8	9.5	10.2	10.9	11.6

출처: 일본 감귤류 표준규격

〈부표 3〉 감귤 선과 평가시 糖度에 따른 가감점(加減點) 기준표

점수	극 조 생	중 생 / 조 생	청 도	壽太郎	덜칭, 박스재배 靑島특품	壽太郎 특품
+ 15	12.0	13.0	14.0	15.0	15.0	16.0
+ 14	11.8	12.8	13.8	14.8	14.8	15.8
+ 13	11.6	12.6	13.6	14.6	14.6	15.6
+ 12	11.4	12.4	13.4	14.4	14.4	15.4
+ 11	11.2	12.2	13.2	14.2	14.2	15.2
+ 10	11.0	12.0	13.0	14.0	14.0	15.0
+ 9	10.8	11.8	12.8	13.8	13.8	14.8
+ 8	10.6	11.6	12.6	13.6	13.6	14.6
+ 7	10.4	11.4	12.4	13.4	13.4	14.4
+ 6	10.2	11.2	12.2	13.2	13.2	14.2
+ 5	10.0	11.0	12.0	13.0	13.0	14.0
+ 4	9.8	10.8	11.8	12.8	12.8	13.8
+ 3	9.6	10.6	11.6	12.6	12.6	13.6
+ 2	9.4	10.4	11.4	12.4	12.4	13.4
+ 1	9.2	10.2	11.2	12.2	12.2	13.2
0	9.0	10.0	11.0	12.0	12.0	13.0
- 1	8.8	9.8	10.8	11.8		
- 2	8.6	9.6	10.6	11.6		
- 3	8.4	9.4	10.4	11.4		
- 4	8.2	9.2	10.2	11.2		
- 5	8.0	9.0	10.0	11.0		
- 6	7.8	8.8	9.8	10.8		
- 7	7.6	8.6	9.6	10.6		
- 8	7.4	8.4	9.4	10.4		
- 9	7.2	8.2	9.2	10.2		
- 10	7.0	8.0	9.0	10.0		
- 15	6.8	7.8	8.8	9.8		



〈부표 4〉 감귤평가시 酸度에 따른 감점(減點) 기준표 (단위: 점)

酸 度	극 조 생 / 조 생	年 內 / 普 通
1.00 ~ 1.09	- 2	- 2
1.10 ~ 1.19	- 4	- 4
1.20 ~ 1.29	- 6	- 6
1.30 ~ 1.39	- 10	- 8
1.40 ~ 1.49	- 16	- 10
1.50 ~ 1.59	- 24	- 14
1.60 ~ 1.69	- 34	- 20
1.70 이상	- 46	- 28

